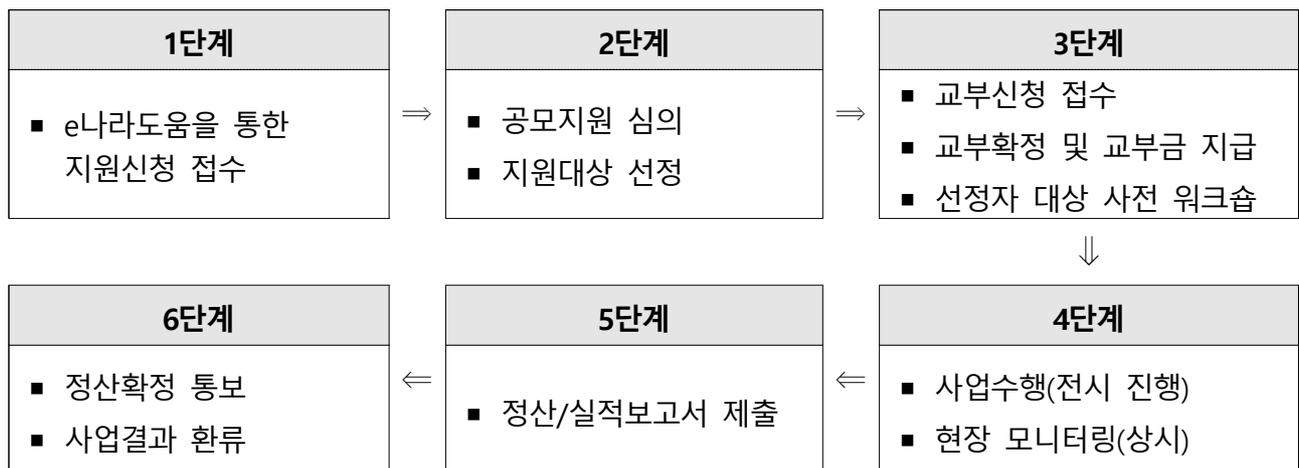


2021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'아트페어 신진작가 특별전 지원' 공모 요강

□ 공모개요

- 공모명 : 2021 아트페어 신진작가 특별전 지원
- 공모기간 : 2021. 2. 4.(목) ~ 2. 19.(금) 17:00
- 지원대상 사업기간 : 2021. 3. 1.(월) ~ 12. 20.(월)
- 지원내용 : 「미술공유서비스」 누리집에 등록된 신진작가의 특별전을 개최하는 아트페어 및 국제 미술행사의 전시 개최 비용 지원
- 지원규모 : 건당 6~15백만원 내 차등 지급, 5개 내외 단체 선정 예정
- 사업목적
 - 신진작가의 전시 지원을 통한 미술시장 진출 기회 제고
 - 미술품 대여·전시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미술 향유·소장 기회 확대

□ 추진절차



□ 홍보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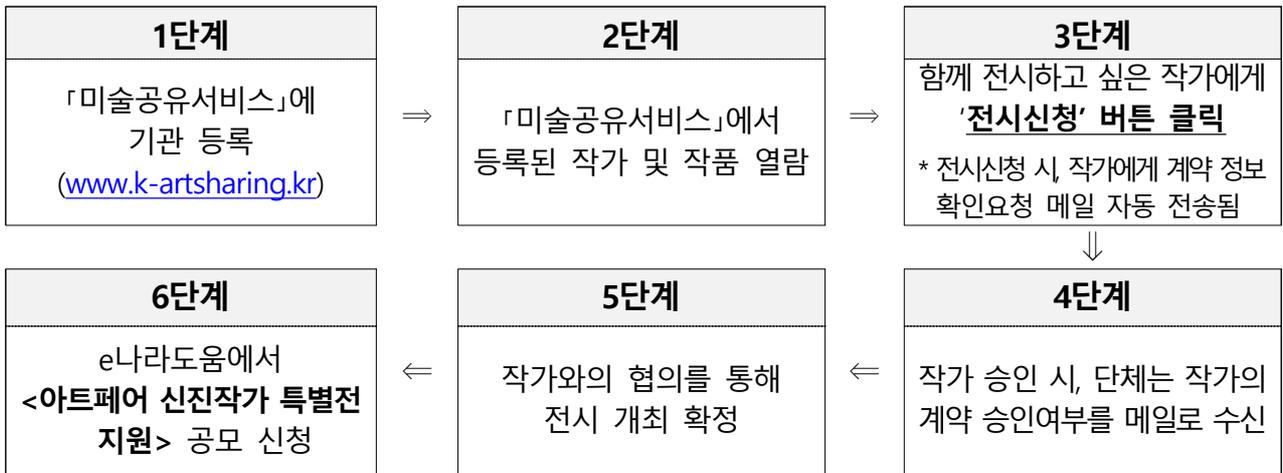
- 유관기관 및 모집대상 단체에 웹전단 발송
-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웹진, SNS 공고문 게재

□ 공모내용

구분	내 용
지원신청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아트페어 등에서 신진작가 특별전을 기획하는 민간단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체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 - '19년 1월 이전 설립 단체로 '19~'20년에 아트페어 및 국제 미술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한 단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원신청서 내에 개최 실적 증빙 필수 * 실적 증빙은 전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홍보물 자료 (리플릿, 포스터, 배너, 광고 등)만 인정 가능, 전시 전경 이미지 인정 불가 - 「미술공유서비스」(www.k-artsharing.kr) 기관회원 가입 및 정보 등록 필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전화, 이메일, 홈페이지, 주소, 전시정보, 업체 소개 등 등록 - 「미술공유서비스」에 등록된 작가의 전시 개최 필수 <hr/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진작가 기준 : '21년 1월 기준 만 45세 이하('76년 1월 이후 출생자)인 대한민국 국적의 작가 • 전시 참여 작가가 「미술공유서비스」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해당 작가 가입 및 정보 등록 후 지원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프로필 이미지, 작가 소개, 작가 이력, 학력, 작품 이미지(5개 이상) 등록 필수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아트페어 및 국제 미술행사 내(內) 신진작가 특별전 부스 전시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작품 운송료, 설치비, 보험료, 홍보물 제작비, 행사물품 임차료, 외부 기획자 사례비(지원금의 30% 이내)에 한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상기 지원항목 외 지원 불가 * 홍보물 제작 시, 해당 특별전을 위한 별도의 홍보물만 지원 가능 (예: 아트페어 전체 홍보물(도록 등) 내에 해당 특별전의 내용 부분 수록의 경우 지원 불가)
지원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부담은 지원금의 20% 내외 책정 및 증빙 필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원금 사용 불가항목은 자부담에 적용하여 사용 가능 * 과세사업자의 경우, 지원금 사용에 따른 부가세는 본 자부담에 적용 불가 - 최소 10명 이상의 작가로 구성된 주제전으로 기획 필수 - 해당 특별전으로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경우 택일하여야 함
지원 불가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체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 및 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- 단체 대표자 혹은 작가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- 행사 답사비 등 준비 비용 -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 불가

<p>지원규모</p>	<p>■ 전시 공간 규모별 차등 지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대 1,500만원 지원 , 5개 내외 단체 선정 예정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31 342 1428 483"> <thead> <tr> <th>공간규모</th> <th>100m² 이하</th> <th>101~200m²</th> <th>201~300m²</th> <th>301m² 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지원금</td> <td>600만원</td> <td>800~1,000만원</td> <td>1,000~1,300만원</td> <td>1,300~1,500만원</td> </tr> <tr> <td>의무자부담</td> <td>100만원</td> <td>150만원</td> <td>200만원</td> <td>25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위 지원금은 공간규모에 따른 지원금 구분 기준이며, 심의 과정에서 과거 유사 사업 실적, 가감점 항목 충족 여부 및 주요 평가항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이 최종 결정됨</p>	공간규모	100m ² 이하	101~200m ²	201~300m ²	301m ² 이상	지원금	600만원	800~1,000만원	1,000~1,300만원	1,300~1,500만원	의무자부담	100만원	150만원	200만원	250만원
공간규모	100m ² 이하	101~200m ²	201~300m ²	301m ² 이상												
지원금	600만원	800~1,000만원	1,000~1,300만원	1,300~1,500만원												
의무자부담	100만원	150만원	200만원	250만원												
<p>선정단체 의무사항</p>	<p>※ 하기 의무사항 불이행 시 차년도 공모 심의에 반영될 수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든 홍보 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, 미술공유서비스 로고 삽입 - 선정 단체 대상 사전/사후 온·오프라인 워크숍 참석 -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 관련 의무 교육 참석 및 서약서 제출 -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<hr/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산 및 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•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회계검사를 받은 후 정산보고서 제출 (회계검사 수수료는 <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>을 참고하여 보조금 예산 안에서 지출 가능) <hr/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후 「미술공유서비스」 누리집 내 전시 실적 작성 필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판매실적은 「K-ART MARKET」에 등록될 수 있음 - 「시각예술 시장조사」 응답 필수 															
<p>지원자격 제외대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해외 단체의 지사 - 학교(초·중·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 - 지방자치단체(광역시·도·군 등 기초 자치 단체),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 - 국·공·시·도·군립 문화예술기관 - 관례적인 회원전, 단체전 및 학교 단위의 졸업 작품전 등 - 보조금 관계법령 지원금 관리규정 상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으로 통보되거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단체 -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 															

□ 신청절차



□ 공모접수

- 접수기간 : 2021. 2. 4.(목) ~ 2. 19.(금) 17:00
- 접수방법 :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'e나라도움'에서 신청
 - ※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에서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
 - ※ 지원규모 미달 시 하반기 2차 공모 예정

- e나라도움 : www.gosims.gr.kr
-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실 : 1670-9595
- e나라도움 이용 시 단체명으로 회원가입 필수(개인명의 불가) 및 공인인증서 필요

- 제출서류 : e나라도움에서만 제출 가능, 이메일 제출 불가

#	필수 제출서류	제출방법
1	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지출예산서 각 1부 * 행사기간이 '20. 3월인 경우 '비예치형' 사업 등록 '20. 4~12월인 경우 '예치형' 사업 등록	e나라도움에서 직접 작성, 제출
2	지원신청서(센터 지정서식/hwp) 1부 * 센터 누리집(www.gokams.or.kr) 공지사항 ▶ 공모요강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	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
3	단체 증빙서류 2부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대표자 국적 증빙 :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*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제외한 정보 삭제 필수	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

※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이후 수정할 수 없음

□ 심의 및 선정절차

- 심의방법 : 지원신청 자격, 과거 사업성과, 지원신청서 등 지원 서류를 구조화된 평가지표에 따라 심의
- 심의일정(안) : 2021. 2월 4주
- 심의방향
 - 작가의 시장 진출 및 일반 국민의 미술품 향유, 소장 기회 확대 여부 고려
 - 전년도 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경우 과거 사업 수행성과 반영
- 주요 심의기준(안)

평가항목	평가지표	평가주체 (평가방법)
신청 자격 및 지원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거 행사 개최 실적 충족 여부 - 필수 서류 제출 여부 - 미술공유서비스 가입 및 정보 등록 여부 - 의무 자부담 책정 여부 - 참여작가의 미술공유서비스 가입 및 사전 정보 등록 여부 	센터 (정량 심의)
과거 사업 수행 성과 (과거 동일 사업 선정단체만 해당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필수 서류 불성실 작성 및 기한 내 제출 불이행 여부 반영 (감점 사항) - 과거 사업 성과 (홍보 실적, 판매 실적, 후속 프로젝트 실적) 반영 - 「미술공유서비스」 특별전 실적 작성 시 <u>가점 부과</u> 	
사업의 기획력 및 계획의 구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시기획 수립 여부 - 추진 세부 일정 및 계획 수립 여부 - 전시 기획 전문인력 투입 여부 - 참여 신진작가 수 반영 ※ 작가미술장터 참여작가 포함 시 <u>가점 부과</u> - 공간 연출 계획 수립 여부 - 홍보 계획 및 판매 전략 수립 여부 	

- 선정결과 발표
 - 발표일정(안) : 2021. 2월 4~5주 중
 - 발표방법 : e나라도움 및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

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수정 불가
- 사업 기간 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서 집행 등록한 금액만 인정됨
 - ※ 이 외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추후 환수조치 됨
-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.
 - ※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교부 확정 후 사업의 규모(작가 및 작품의 수 등)가 축소될 경우 지원 결정액이 축소·조정됨
- 지원신청 내용(과거 아트페어 및 국제 미술행사 개최 실적, 전시 장소 등)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지원이 취소됨
- 과거 수행했던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
- 공모 이전 수행했던 지원 사업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, 해당 민원이 처리 완료된 이후 교부 진행이 가능함
-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선정 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
 - ※ 「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」에 따른 지원금 집행 규정 미준수 시 환수 조치됨
(예 : 타(대표 명의 포함) 통장으로 지원금 계좌이체 금지,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, 사업 수행 후 5년 동안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)
- 해당 전시 종료 후 동일 주제전으로 타 공모 사업(미술품 대여· 전시 지원 등)에 지원 시 선정 우대
-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 변경, 축소 및 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, 예술경영지원센터의 '코로나 19 대응 지침'에 근거하여 기·미집행 보조금 인정범위가 결정될 수 있음

※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

(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(2021.1.5.) 제10조 참고)

제10조(보조금 교부조건) ① 주관부서의 장은 「보조금법」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~마. (생략)

바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

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
사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(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

2~3. (생략)

4.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에 대해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

가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제14조의2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 및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

나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제13조의2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 및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

②-④ (생략)

끝.